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확정·통보되고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제천·밀양)에서 소방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의 개선을 위해 인명구조용 에어매트 보강 및 휴대용 무선 통신망 교체 등 9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소방재난본부 총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28,217	823,779	4,438	0.5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828,217	823,779	4,438	0.5

* 재난안전특별 교부세 1,648백만원 간주처리 예산 포함(화재안전특별조사단 운영비)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644,290	1,635,326	8,964	0.5
일	반 회 계	816,073	811,547	4,526	0.5
특	별 회 계	828,217	823,779	4,438	0.5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해당 없음

2)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28,217	823,779	4,438	0.5
세 외 수 입	2,517	2,517	-	-
특별교부세(재난안전)	1,684	1,684	-	-
국고보조금 등	2,837	2,852	△15	△0.5
보전수입 등	5,106	5,179	△73	△1.4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816,073	811,547	4,526	0.8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75,625	275,625	-	-
소방안전교부세	32,093	24,750	7,343	29.7
일반회계전입금	508,355	511,172	△2,817	△0.6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816,073	811,547	4,526	0.6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0	0	0	0
	재무활동	816,073	811,547	4,526	0.6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16,073	811,547	4,526	0.6
	국고보조금반납	0	0	0	0
	정책사업비	0	0	0	0

2)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828,217	823,779	4,438	0.5
행정운영경비	611,687	611,687	-	-
재무활동	58	58	-	-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0	0	-	-
국고보조금반납	58	58	-	-
정책사업비	215,087	210,649	4,438	2.1
예비비	1,385	1,385	-	-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해당 없음

나. 소방안전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감	사유	사업별 설명서
총계		67,746	63,308	4,438		
계속사업	소방행정타운 건립 (2단계 전문훈련시설)	40,504	38,955	1,549	소방학교 교육운영 지장요인 최소화 를 위한 2단계 전문교육시설 (토목공사) 조기착공에 필요한 추 경예산 반영 필요 * 소방학교 '18. 10월 이전계획(1단계 '18. 6월 준공)	P.355
	재난대응능력 향상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431	258	173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제천, 밀 양)의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다 중이용시설 관계인에게 훈련·교 육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보급을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358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소형 에어매트 보급)	4,059	3,589	470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제천, 밀 양)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전 개를 위해 소형 에어매트 보급을	P.359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주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4,213	4,113	100	소방기본법 개정('17.12.26)에 따라 소방활동중 민·형사상 소송 수행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360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685	655	30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제천, 밀양)의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표준 매뉴얼(안) 제작을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362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고가사다리차 교체)	14,285	13,545	740	내용연수(12년) 경과한 고가 사다리차 교체를 통해 고층건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363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UHF 휴대용 무전기 교체)	2,707	1,301	1,406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 유무선 통신 방식(아날로그→디지털) 개선을 위해 휴대용 무전기 교체를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364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862	892	△30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의 119구급상황관리사(11명)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고 매칭(50:50) 사업으로 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 필요	P.366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 없음.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8,160억 73백만 원임.

2) 소방안전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8,282억 17백만 원임.

나) 세출 : (순계)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8,282억 17백만 원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115억 47백만 원 대비 0.6% 증액(45억 26백만 원)된 8,160억 73백만 원이며,
- 소방안전특별회계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 8,237억 79백만 원 대비 0.5% 증액(44억 38백만 원)된 8,282억 17백만 원이고, 세출은 순계예산¹⁾규모로 기정예산 8,237억 79백만 원 대비 0.5% 증액(44억 38백만 원)된 8,282억 17백만 원임.
- 금회 추경편성은 총 8개 사업으로 7개의 증액사업과 1개의 감액사업으로, 이 중 증액사업은 ‘소방행정타운 건립’, ‘재난 대응능력 향상’,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감액사업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해당함.

1)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자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8,237억 79백만 원 대비 0.5% 증액(44억 38백만 원)된 8,282억 17백만 원 임.
- 이는 자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천 3백만 원이 감소하고, 의존수입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73억 43백만 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1천 5백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8억 17백만 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세입예산 세부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구 분	2018 추경예산	2018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828,217	823,779	4,438
1. 자체수입	7,623	7,696	△73
◦ 사업외수입	5,106	5,179	△73
- 순세계 잉여금	2,822	2,895	△73
2. 의존수입	820,594	816,083	4,511
◦ 국고보조금 등	2,837	2,852	△15
◦ 기타회계전입금	816,073	811,547	4,526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275,625	275,625	-
- 소방안전교부세(75%)	32,093	24,750	7,343
- 일반회계전입금	508,355	511,172	△2,817

나. 세출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

1) 소방행정타운 건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0,504,000	38,955,000	1,549,000	
사무관리비	320,000	320,000	-	
시 설 비	37,436,079	35,936,079	1,500,000	행정타운 2단계 공사비 1,500,000천원×1식
감 리 비	713,000	664,000	49,000	감리비 49,000천원×1식
시설부대비	34,921	34,921	-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000,000	2,000,000	-	

-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시설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인력 및 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총 사업비 2,805억 원을 투입하여 10년(2014년~2023년)간 은평구 진관동 부지²⁾에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전문훈련시설, 소방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 금회 2단계 전문훈련시설의 조기착공(토목공사비)을 위해 기정 예산 389억 55백만 원 대비 15억 49백만 원(3.9%) 증가한 405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 위치 : 은평구 진관동 110-26(은평뉴타운 3-1지구, 물푸레골), 부지면적 48,950.1㎡

[표] 소방행정타운 건립 단계별 추진내역

추진단계	추진연도	사업대상	규모	건축비
			계	2,805억
부지매입	'14. ~ '23. (10년)	부지매입비	48,950㎡	1,523억 ³⁾
1단계	'14. ~ '18.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6개동, 7개	687억
2단계	'18. ~ '19.	전문훈련시설	4개동, 4개	139억
3단계	'19. ~ '22.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1개동	456억

-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2단계 조기착공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1단계 사업(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이 '18. 8월에 준공됨에 따라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의 9월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전문훈련시설을 건립하는 2단계 사업 중 종합훈련장 부지 지하에 복합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가 차년도에 착공할 경우 금년 9월 이전을 완료한 소방학교 교육생 등이 터파기 공사장 주변을 빈번하게 가로지르는 불편과 위험성이 제기되어,

3) 부지매입비: 연차별 할부금 현황 (원금 13,511,294,700원 + 연부이자(연3%))

(단위 :원)

구분	계	원금	이자(연3%)
계	152,313,750,540	135,112,947,000	17,200,803,540
1회차('14년)	13,511,294,700	13,511,294,700	
2회차('15년)	17,159,344,260	13,511,294,700	3,648,049,560
3회차('16년)	15,714,561,160	13,511,294,700	2,203,266,460
4회차('17년)	16,348,666,580	13,511,294,700	2,837,371,880
5회차('18년)	15,943,327,740	13,511,294,700	2,432,033,040
6회차('19년)	15,537,988,900	13,511,294,700	2,026,694,200
7회차('14년)	15,132,650,060	13,511,294,700	1,621,355,360
8회차('15년)	14,727,311,220	13,511,294,700	1,216,016,520
9회차('16년)	14,321,972,380	13,511,294,700	810,677,680
10회차('17년)	13,916,633,540	13,511,294,700	405,338,840

[표] 2단계 전문훈련시설 건립 사업개요

전문훈련시설 - 6종(4,030㎡)			시민지원동	종합운동장
건축물	지하(철)복합건물	지하1층 2,800㎡	2층 800㎡ * 기념품점, 대기실, 안내실, 전시장 등	지상, 3,619㎡ (47m×77m) * 인조잔디 조성
	붕괴·도시탐색	지상3층 600㎡		
	목조문화재	지상1층 150㎡		
구조물	차량사고	지상, 150㎡		
	화생방 테러	지상, 150㎡		
	실화재 훈련	컨테이너, 180㎡		

- 소방학교 교육생의 교육 및 훈련⁴⁾에 공사로 인한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19.3월~12월까지의 계획을 소방학교가 이전하는 9월 이전에 조기 착공하여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만이라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임.

[표] 공사기간 변경

구 분	당초계획	변경 "안"	비 고
착공일	'19. 3월	'18. 7월	4개월 단축 ('19년 하반기부터 활용)
완공일	'19.12월	'19. 8월	



[그림] 소방행정타운 건립 단계별 추진내역

4) '18.7.2일 174명 소방행정타운 내 소방학교 입교(현재 교육인원 169명, 졸업예정일 '19.1.11)

- 따라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동 추경편성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이나,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이 단계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 1단계 소방학교 이전과 2단계 토목공사 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최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일정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음.

2) 재난대응능력 향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30,780	257,780	173,000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가이드북 제작
사무관리비	358,280	185,280	173,000	- 제작 자문료 35,000천원 - 인쇄비 3,000원 × 45,000부 = 135,000천원
행사운영비	44,000	44,000	-	
국제화여비	16,000	16,0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8,000	-	
포상금	4,500	4,500	-	

- 동 사업은 재난대비 긴급구조기관으로서 능력을 배양하고 긴급구조훈련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간 협업시스템 강화로 상시 대응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57백만 원 대비 1억 73백만 원 (67.1%) 증가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정사유는 최근 대형화재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인의 초기대응훈련 및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소방대상물⁵⁾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⁶⁾에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재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체 209,260개소 중 소방훈련대상은 53,467개소이며, 이 중 소방관서 합동훈련⁷⁾ 대상은 8,064개소이고 관계인에 의한 자체훈련 대상이 45,403개소임.

[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대상 현황

계	특급 (30층이상 20만㎡이상)	1급 대상물 (11층이상 15천㎡이상)	2급 대상물 (스프링클러 워터소화전 이상)	3급대상물 (자탐설비 이상)	공공기관
53,467	275	3,604	22,531	22,872	4,185
- 소방관서 합동훈련 대상 : 8,064개소(특급 275, 1급 3,604, 공공기관 4,185)					
- 관계인 자체 훈련 대상 : 45,403개소					

- 5)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 6)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을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급 및 1급, 공공기관은 연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여기서, 자체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소방훈련에 비전문가로서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기에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훈련의 보편화 및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가이드북 제작·보급을 통해 연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토록 유도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됨.
- 다만, 건축물의 구조, 사용용도, 이용자특성 등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이드북 제작 시 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3)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058,860	3,588,860	470,000	인명구조용 소형 에어매트 보급
사무관리비	494,400	494,400	-	
자산및품취득비	3,564,460	3,094,460	470,000	5,000천원 × 94대

- 동 사업은 화재, 붕괴 및 수난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사고 유형별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와 첨단장비 확보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5억 88백만 원 대비 4억 7천만 원(13.0%) 증가한 40억 59백 만원을 편성함.

- 금회 추정사유는 현재 건축물화재 발생 시 3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라도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기존의 에어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50kg의 에어매트를 다수의 인원이 배치장소로 운반을 하고, 송풍기 2대를 사용해 약 10분정도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화재현장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큰 실정임.
- 이에 기존 제품에 비해 무게를 줄이고 전개속도를 높인 소형 에어매트를 구매(94대)하려는 것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사용가능하고 무게가 49kg에 불과해 2인 운반이 가능하며, 공기호흡기를 통한 주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약 1분 이내로 전개가 가능해 이동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인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장비인 만큼 적정규격에 대한 신중한 검수를 거쳐 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소형 에어매트 규격



【소형에어매트】

- 재질 : 폴리폰(상판) 옥스퍼드(하판)
- 크기 : 3m×3m×3m(가로×세로×높이)
- 무게 : 49kg
- 전개방식 : 공기주입식(공기호흡기 bombe 1개 사용)
- 전개시간 : 약 1분 이내 가능
- 유효높이 : 3층(5층 이상의 경우 대형 에어매트 전개)

[표] 대형 및 소형 에어매트 현황 비교

구분	대형 에어매트	소형 에어매트
크 기	크기에 따라 다름	3m×3m×3m(가로×세로×높이)
무 계	250kg	49kg(2명이 이동가능)
전개방식	송풍기 2대 사용	공기주입식(공기호흡기 불배이용)
전개시간	통상 10분정도 소요	통상 1분정도 소요
유효높이	4층~20층	3층
보유수량	33개	50개



<구조대 현장도착>



<에어매트 설치>



<인명구조>

[그림] 소형 에어매트 전개과정

4)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213,232	4,113,232	100,000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사무관리비	447,426	447,426	-	-
공공운영비	121,456	21,456	100,000	- 소방공무원 등 7,200명×16,869원=121,456천원 * 기 편성액 : 21,456천원 제외
재 료 비	1,149,850	1,149,850	-	
자산및물품취득비	2,494,500	2,494,500	-	

- 동 사업은 구급장비보강 및 소모성 물품 등을 유지관리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구급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1억 13백만 원 대비 1억원(2.4%) 증가한 42억 13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사유는 기존에 구조·구급업무에 한정되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모든 소방업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요구하면서도 화재, 훈련, 교육 등의 분야는 배상책임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아 보상 및 배상문제가 대두되자 소방기본법이 개정⁸⁾됨에 따른 것임.
- 최근 현장활동 범위가 다변화되고 소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려는 것은 소방활동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됨.

8) 소방 기본법 제49조의 2(손실보상) (신설 2017.12.26)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85,100	655,100	30,000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사무관리비	142,280	112,280	30,000	- 용역비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기타보상금	10,000	10,000	-	
시 설 비	532,820	532,820	-	

- 동 사업은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55백만 원 대비 3천만 원(4.5%) 증가한 6억 8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사유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시 편리하면서도 즉시 활용이 가능토록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작성 서식 및 방법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소방계획서 작성 시 통일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작성 방법 및 매뉴얼의 보급은 민간 화재대응역량의 강화에 일조 할 것으로 여겨짐.

6)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285,000	13,545,000	740,000	화재안전 매뉴얼 제작
자산및물품 취득비	14,285,000	13,545,000	740,000	- 고가사다리차 740,000천원 × 1대 = 740,000천원

- 동 사업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방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 된 소방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35억 4천 5백만 원 대비 7억 4천만 원(5.1%) 증가한 142억 85백만 원을 편성함.
- 이는 서초소방서에 배치되어 사용 중인 고가사다리차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동 차종은 단종 된 차량으로서 부품수급이 곤란하고 내용연수 또한 경과⁹⁾하여 잦은 고장으로 인해 최근 3년간 97일 동안 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남.
- 소방차량 및 장비의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상시 정상적인 작동 및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교체 필요성은 인정되나,

9)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26.) 제4조(내용연수) : 소방사다리차 12년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체 시기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교체가 늦어진 점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 바, 향후 계획적인 소방차량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표] 교체예정인 고가사다리차 주요 제원

	<p>【에버타임 ERL53C-V(바스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4,000mm이하, 넓이 2,500mm이하, 길이 12,500이하 - 무게 톤, 탑승인원 명, ○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시 높이 53M(18층 높이),
---	---

7)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707,158	1,301,158	1,406,000	UFH 휴대용 무전기 1,406대 교체
사무관리비	179,798	179,798	-	
공공운영비	551,360	551,360	-	
자산및물품 취득비	1,976,000	570,000	1,406,000	- 1,000천원 × 1,406대 = 1,406,000천원

- 동 사업은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무선망(UHF)이 '18.12.31일부로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및 통화품질이 우수한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3억 1백만 원 대비 14억 6백만 원 (108.0%) 증가한 27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최근 제천과 밀양 화재현장¹⁰⁾에서 노후 된 무선통신망으로 인하여 대원들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소방 활동 작전이 유기적이지 못해 그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언론 지적¹¹⁾과 함께 소방무전기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국무총리 지시¹²⁾에 따라,
-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교체대상 1,806대의 무전기 중 휴대용 무전기인 1,406대를 우선적으로 교체·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보급이 완료되면 디지털무전기 전환율은 70.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2018년 구매 완료시 디지털 무전기 보유 현황

구분	합계(대)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보유기준	5,512	202	714	4,596
현재보류수량 (교체대상수량)	4,729 (1806)	179 (72)	906 (328)	3,644 (1406)
2018년 기 구매수량	239	24	15	200
추경구매예정수량	1,406	0	0	1,406
디지털 / 아날로그	3,609/2,526	130/49	220/686	3,259/1,791 (1,791대 불용필요)
디지털 무전기 전환율(%)	65.5%	64.4%	30.8%	70.9%

10) 제천 및 밀양 화재 개요

구분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일자	2017년 12월 21일 15시53분경	2018년 1월 26일 오전7시35분경
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제천스포츠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피해사항	29명 사망, 37명 부상	46명 사망, 109명 부상

- 11) 제천 화재, 골든타임 18분 "무전기 안 터졌다", MBC뉴스 (2018.1.6)
소방무전기 10대 중 4대 '떡통'수준...수명 초과 노후율 37%, 연합뉴스 (2018.01.16.)
제천 참사때 떡통...충북소방 무전기 절반 이상 노후, 청주CBS (2018.01.16.)

- 12) 국무총리 지시사항-5009244호(2018.1.23), 「현장 재난지휘 관련 소방무전기 교체 사업 조속 추진」

- 이처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될 경우, 사용가능 채널이 2배 증가함으로써 무선혼잡도가 개선되어 음성품질이 우수해지고 암호화 통신으로 인한 도·감청의 위험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잔여수량에 대한 구매계획을 신속히 세워 소방현장 정보전달 및 지휘체계 확립에 매진해야 할 것임.

[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단점 비교

구분	아날로그	디지털
형 태		
통신방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통신방식, 아날로그 방식 · 건물 내, 지하공간에서 통신 시 D-TRS에 비해 통신영역이 넓음 · 음성통신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통신방식, 디지털 방식 · 건물 내, 지하공간에서 통신 시 D-TRS에 비해 통신영역이 넓음 · 음성통신과 저속의 데이터통신 가능
※직접통신방식 : 무전기 간 통신 시 전파가 직접 전달되어 통신이 이루어지는 방식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 증가(2배)로 무선 혼잡도 개선 · 음성품질이 우수 · 암호화 통신으로 도·감청위험 없음 · 무전기 경량화로 현장대원 부담 감소 (428g → 240g~355g) · 통화편리기능 (발신자확인, 우선순위통화, 가로채기 등)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RS 통신방식에 비해 광범위한 동시통신이 어려움 · 음성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도·감청 가능성 있음 · 통화편리기능(가로채기 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RS 통신방식에 비해 광범위한 동시통신이 어려움

8)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62,074	892,074	△30,000	UFH 휴대용 무전기 1,406대 교체
기간제근로 자 등 보 수	862,074	892,074	△30,000	- 119구급상황관리 센터 인건비 △30,000

- 동 사업은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119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응급자원정보를 제공하여 구급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92백만 원 대비 3천만 원(△3.4%) 감소한 8억 6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센터로서 소방직 9명, 의무사무관 3명, 구급상황관리사 14명 등 총 26명이 1일 9명씩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인력 현황

구분	총원	소 방 직				기 타		
		소계	소방령	소방위	소방장	소계	구급상황관리사 (대체근로자)	임기제 지방 의무사무관
현원	26	9	1	3	5	17	14(3)	3

* 구급상황관리사 정원은 15명(5명씩 3교대)이나, 현재 14명(대체근로자 3명 채용)근무

- 금회 감추경 사유는 이 중 구급상황관리사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및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각각 지원하여 인건비를 총당하고 있는데, 당초 대체인력에 대

하여 4명분을 요청하였으나 소방청에서 '18년도 응급의료기금 재정여건을 사유로 '18.4.23일에 3명으로 감축하여 확정 통보 함¹³⁾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임.

-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경우 야간에도 업무가 지속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하겠음.

13) 소방청 119구급과-2307호(2018.04.16.),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119구급대지원) 교부결정 통지」